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115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을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-43(송월길 52)
- 사용자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501.5㎡, 건물 연면적 1,484.96㎡
- 사용허가 기간 : 2020.1.1. ~ 2024.12.31. (5년)

### 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'서울자유시민대학' 운영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 충족함

-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시, 사용료 상당 출연금 및 부가가치세 예산절감 가능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19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예정('19.10.31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력TF팀 최경진 (☎ 2133-3992)

# 관 련 법 령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###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### 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